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7
----------	------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 법령 입안 심사기준 적용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운영에 필요한 조항 개정 및 신설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른 제명 개정
-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제 조건의 명문화 등 운영에 필요한 조항 개정 및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28일 ~ 11월 7일(10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9. 관련부서 : 혁신기획관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를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3조제1항의 본문 중 “12인” 을 “15인” 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조의2의②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으로 하고, ①항의 “간사 1인” 을 “간사와 서기 각 1인” 으로 하고, ②항의 “규제개혁 업무담당” 를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자가” 로 한다.

제8조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명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 15인 ----- -----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위촉해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조의2의②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이 된다.</p>	<p>제6조(간사 와 서기)① ----- -----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 --- ② -----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자가 ---</p>
<p>제8조(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수당) ----- -----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 (생략)</p>	<p>제10조 (현행과 제9조와 같음)</p>

참고사항 [현행 조례]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9.01.12 조례 제5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규제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